

의안번호	2205283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B46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1항) 1의2.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에 대한 반증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에 대한 현행에 따른 주요 재정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규정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무제공자’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¹⁾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 지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적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의규정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³⁾,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적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의 및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업종이 직접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기타 법률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인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을 반증해야 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2)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3)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